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확대 등〉

■ 이종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148호)

2026. 3.

정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선 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확대검토의견	3
2. 하도급연동제 적용 예외 규정 개선	9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종배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12. 11.
3. 회 부 일 : 2025. 12.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도급대금의 100분 10 이상의 비용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을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조정하도록 하되 양 당사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하도급대금의 연동 적용대상을 원재료에만 한정하고 있어 원재료 수준으로 에너지비용 또는 운송비용 또는 용수비용이 많은 업종에는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적용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거래상 지위로 인하여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연동 약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어려우며 원사업자의 미연동 합의요청을 거절하기도 어려워 실질적으로 연동제가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에 에너지비용, 운송비용, 용수비용을 포함하고 수급사업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만 미연동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합리성을 제

고하고자 함(안 제2조제16항 및 제3조제4항제4호 등).

Ⅲ. 검토의견

1.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확대

- 개정안은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적용 대상인 ‘주요 원재료’를 ‘주요 공급원’으로 그 용어를 변경하고, 주요 공급원에 운송비와 용수 비용을 추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① ~ ⑮ (생략)	제2조(정의) ① ~ ⑮ (현행과 같음)
⑯ 이 법에서 “주요 원재료”란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⑯ -----주요 공급원가----- -----직접 사용되는 원재료, 에너지, 운송, 용수 비용으로서----- -----각 비용을-----.
⑰ 이 법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	⑰ -----주요 공급원가가-----

현행	개정안
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 -----.

□ 하도급대금 연동제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으로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제도임.

- 현행법은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주요 원재료’로 정하고 있는데, ‘주요 원재료’란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함(법 제2조제16항).

- 또한, 2026년 8월 11일 시행 예정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21340호)은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에 ‘주요 에너지’를 추가하고 있고, ‘주요 에너지’란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에너지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에너지를 의미함(법 제2조제17항).

□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수탁사업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당한 대가 보장을 위해 지난 2023년 법제화한 것으로서

하도급 거래에서의 비용 상승 위험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분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원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 개정안은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범위를 주요 원재료 가격, 에너지 비용에 더하여 운송·용수비용까지로 확대하고, 이를 ‘주요 공급원가’라고 명명하여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위험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분담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임.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이 그 의의를 인정할 수 있음.

- 먼저,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 측면에서 유리함.

국회는 2023년 제도 도입 당시, 연동제의 목적이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완화라는 점을 고려하여 그 적용대상인 ‘주요 원재료’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세부 지침에서 이를 최대한 넓게 해석함으로써 제도의 취지를 효과적으로 구현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으므로 법률에서 연동제의 적용 대상을 명시적으로 확대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음으로, 개정안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현장안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2025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¹⁾에

따르면 원사업자의 39.3%, 수급사업자의 30.3%만이 제도의 내용을 인지하고 있음.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사업자가 제도를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봄.

- 또한, 수급사업자 단체도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확대에 찬성하는 입장임.

대한전문건설협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그 적용 범위가 좁고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하여 현장 활용이 저조하므로 연동제 적용 범위 확대를 통한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하여 개정안에 찬성하는 의견임.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첫째, 법적 안정성 측면임,

국회는 2026년 2월에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을 주요 원재료에서 주요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고,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즉,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의 확대가 최근에 입법화되었고

1) 조사기간(2024. 1. 1. ~ 2024. 12. 31.), 조사대상(제조·용역·건설업종 10만개 사업자)

새 제도가 시행되기 전이므로 법률 개정이 하도급거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평가가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봄.

- 둘째, 입법목적의 달성 측면임.

운송비와 용수비는 상대적으로 가격의 변동성이 작아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적용대상이 되더라도 실제 수급사업자가 체감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음.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운송비와 용수비는 최근 5년간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적이 없고,²⁾ 운송비의 경우 경영전략에 따라 가격에 대한 통제가 어느 정도 가능하며, 연료비(에너지비용)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연동제를 적용하면 중복 보전의 소지도 있음.

아울러 운송비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2호³⁾에 따라 고시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기초로 그 운임이 정해지므로 이를 연동제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이 가격의 예상치 못한 급등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봄.

2) 이러한 특성 때문에 대한전문건설협회는 법률에서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완화된 비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즉, 현행 제도는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 상한 내에서 합의한 비율(통상 10%)’ 이상으로 변동하여야 하도급대금에 연동하여 보전받을 수 있는 구조이므로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10%보다 낮은 상한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임.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12.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란 화물차주에 대한 적절한 운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주,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 등이 화물운송의 운임을 산정할 때에 참고할 수 있는 운송원가로서 제5조의2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5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원가를 말한다.

- 셋째, 유사한 제도와의 정합성 측면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함)은 납품대금 연동제⁴⁾의 근거를 두고 있는데, 그 적용 대상과 적용방법 등이 현행법과 매우 유사하므로 개정안처럼 운송비와 용수비를 연동제 적용대상으로 추가할 경우 상생협력법의 개정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봄.⁵⁾⁶⁾

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주요 원재료”란 수탁·위탁거래에서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13. “납품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참고로 국회는 상생협력법에 대해서도 주요 에너지 비용을 납품대금 연동제의 적용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하였고, 2026년 12월 시행 예정임.

법률 제21191호(2026년 12월 2일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의2. “주요 에너지경비”란 수탁·위탁거래에서 물품등의 제조등에 사용되는 에너지(「에너지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에 대한 요금으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에너지 요금을 말한다.

13. “납품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 또는 주요 에너지경비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이와 관련하여 운송비와 용수비도 납품대금 연동제의 적용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생협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임(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151호)

2. 하도급연동제 적용 예외 규정 개선

- 개정안은 하도급대금 미연동에 대한 합의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미연동을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로 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생략)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 ----- ----- ----- -----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u>주요 원재료</u> ,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 ----- <u>주요 공급원</u> <u>간</u> ----- ----- -----
4. (생략)	4.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서면에 제2항제3호에 따른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그 취지와 사유를 서면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1. ~ 3. (생략) 4. <u>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u>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④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수급사업자의 서면요청으로 원사업자와</u>----- ----- -----
⑤ ~ ⑫ (생략)	⑤ ~ ⑫ (현행과 같음)

□ 현행 제3조제4항제4호는 하도급거래의 양 당사자인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하도급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취지와 사유를 서면에 분명하게 적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예외 규정은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확실적인 적용이 오히려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해칠 가능성을 염두한 제도이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 있지 아니한 하도급거래 관계상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명시적·묵시적으로 합의를 강요하는 등 악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 개정안은 합의에 의한 하도급대금 미연동을 수급사업자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로만 한정함으로써 원사업자의 연동 미실시 합의 강요 등을 통한 의무 회피로부터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임.

□ 그러나 개정안대로 입법하더라도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여전히 합의를 강요할 수 있음.

- 예컨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합의를 강요한 후 그 형식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미연동 요청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을 취하게 한다면 개정안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 침해는 방지하기 어려운 맹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⁷⁾

문 의 처
02)6788-5109

7) 공정거래위원회도 이와 유사한 의견을 제시함.